

원주시공고 제2026-1531호

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9일

원 주 시



1. 자치법규안명: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
2. 예고기간: 2026. 5. 29. ~ 6. 18.(20일)
3. 제안이유

가. 상위법인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포괄적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시행 중이던 일부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

나. 주민 수요를 반영한 가구별 사업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 혜택을 넓히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에 따라 아래의 사업을 주민지원사업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6조제1항)

- 마을회관 중식비 지원
- 자원순환 및 환경시설의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 지원
- 마을 CCTV 설치 지원

나. ‘가전제품 구입 지원’ 등 가구별로 지원하는 사업의 항목을 명시함(안 제6조제2항)

5. 의견제출: 「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(자원순환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○○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우편 또는 팩스

1) 주소: (26384) 원주시 시청로 1, 원주시청(자원순환과)

2) 팩스: 033-737-4815

※ 문의전화: 033-737-3084

라.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(<http://www.wonju.go.kr/>)의 원주소식 공고/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마을회관 중식비 지원

5. 자원순환 및 환경시설의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 지원

6. 마을 CCTV 설치 지원

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가전제품 구입 지원

2. 그 밖에 시장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주변영향지역 지원 등) ① 영 별표 3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중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그 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② <u>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,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6조(주변영향지역 지원 등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마을회관 중식비 지원</u></p> <p>5. <u>자원순환 및 환경시설의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 지원</u></p> <p>6. <u>마을 CCTV 설치 지원</u></p> <p>② <u>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가전제품 구입 지원</u></p> <p>2. <u>그 밖에 시장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</u></p>